

# 2023년 KOLAS 공인기관 평가비용 안내

「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」 제3조  
 따른 **2023년도 평가비용**(평가수당과 출장여비 산정에 관한 사항) 안내

- ▶ **평가수당 적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작성된 평가계획서부터 적용**
- ▶ **출장여비 적용은 2023년 3월 13일 이후 작성된 평가계획서부터 적용**

[ 평가 비용 : ①평가수당과 ②출장여비로 구분하여 지급 ]

## ① 평가수당(현장평가, 문서심사)

- 「2022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」(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 연구실-377호,2022.12.12.) 기타부분 “특급기술자” 노임단가(325,337원) 기준 적용

- ▶ **변경된 평가수당 적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작성된 평가계획서부터 적용**  
 (현장평가가 2023.1.1. 이후인 경우, 평가계획서가 2022년에 작성되었다면 이전 평가수당 적용)

(단위 : 원)

평가 일수	평가수당 (문서심사 동일)	소득세 (소득금액의 8%)	주민세 (소득세의 10%)	공제액	평가수당 (공제후/원단위 절삭)
1일	325,337	26,027	2,603	28,630	296,707 (296,700)
2일	650,674	52,054	5,205	57,259	593,415 (593,410)
3일	976,011	78,081	7,808	85,889	890,122 (890,120)

## ② 출장여비

### ※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(2023.03.02.)에 따른 국내 여비 수정

- 국내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(공무원 5급 기준)에 따르며, 국외의 경우 실비로 지급

➡ 실비정산으로 되어 있는 숙박비/운임은 반드시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정산 가능

### ① 여비 산정에 관한 사항

- 근무지 내

거 리	여비지급기준	비고
▶ 왕복 12 km 미만	2만원(정액)/일	
▶ 왕복 12 km를 넘더라도 동일시·군		
▶ 다른 시·군이고 왕복 12km이상이라도 교통여건(지하철, 버스 등)을 고려		

- 근무지 외

거 리	여비지급기준	비고
▶ 왕복 12 km 이상	①운임 ②일비 ③식비 ④숙박비	
<b>① 운임</b> : 실비정산 <b>② 일비</b> : 25,000원/일 <b>③ 식비</b> : 25,000원/일 <b>④ 숙박비</b> : 실비정산 <상한액> 서울특별시 100,000원, 광역시 80,000원, 그 외* 70,000원 *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숙박비 상한액은 그 외로 70,000원 지급		

- 운임 및 숙박비 산정 등

① 철도운임(일반실 기준 실비), 고속(시외)버스운임(실비), 항공운임(실비)

➡ 실비 정산 : 영수증에 나타난 금액

②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이용시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

➡ 연료비:  $\text{여행거리 편도(km)} \times \text{유가} \div \text{연비(km/L)}$

1) 여행거리 기준 : 최소거리 기준

2) 유가: 출장 당일 기준 유가(오피넷 ‘전국 평균유가’ 참조)

3) 연비(km/L)\* : 휘발유 차량(13.30), 경유 차량(14.30), LPG 차량(9.77)

\* 휘발유, 경유, LPG 차량 이외의 전기, 수소 차량 등은 LPG 차량을 준용

4) 다만,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,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,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

\* 통행료 및 주차료 :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영수증에 나타나는 금액

③ 숙박비는 실비정산으로 하고 숙박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(영수증 등)를 갖추어 제출. 기준상 정해진 상한액 초과 시 상한액만 지급한다.(증거서류 첨부) 다만,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초과하여 실비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숙박비 상한액의 30%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.

#### <추가지급 예>

- 해당지역에 숙박비 상한액 내에 숙박 가능한 곳이 없거나, 숙박시설이 있어도 출장목적지와 거리가 멀어 출장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
- 학술회의 등의 경우 숙박예정시설로 지정된 숙박시설의 객실요금이 숙박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
- 여비액에 상응한 숙박시설 이용시 신변의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높은 경우 등

#### ② 여비 산정 예시

**사례 1** 회사가 서울(서울시청)인 평가사가 대구(대구시청)로 3일간 평가를 나간 경우 (근무지 외)

#### <여비 산정 내역>

- (일비) 25,000 x 3 = 75,000원

\* 서울시청-서울역 교통비 및 대구역-대구시청 교통비는 일비로 정산

- (식비) 25,000 x 3 = 75,000원

- (숙박비) (실비정산시) (55,000(영수증 금액) x 2) = 110,000원

(상한액정산시) (80,000 x 2) = 160,000원

\* 숙박비 상한액 초과시에도 숙박 증빙 영수증 제출

- 여비

- (KTX 이용시) 서울-대구 KTX : 43,800원 x 2 = 87,600원
- (자차 이용시) 276.55 km x 1,548(휘발유) ÷ 13.30(연비) = 32,180원(연료비)+ 12,500원(통행료) = 44,680원 x 2 = 89,360원  
(N포털 기준 최단거리 : 276.55 km, D포털 기준 : 278.9 km)

- 출장비 총액

<숙박비 상한, KTX 이용시>

구분	일비	식비	숙박비	여비 (KTX 이용)	총액
금액	75,000	75,000	160,000	87,600	397,600

<숙박비 실비, 자차 이용시>

구분	일비	식비	숙박비 (실비적용시)	여비 (자차 이용)	총액
금액	75,000	75,000	110,000	89,360	349,360

\* 참고(산정 내역)

구분	D+0	D+1	D+2
일비	25,000	25,000	25,000
식비	25,000	25,000	20,000
숙박비(상한액)	80,000	80,000	-
숙박비(실비)	55,000	55,000	-
여비(KTX)	서울-대구 KTX : 43,800원x2=87,600원		
여비(자차)	서울-대구, 대구-서울 연료비(32,180원)+통행료(12,500원)=44,680원x2=89,360원		

**사례 2** 회사가 안양(안양시청)인 평가사가 서울(구로시청)로 3일간 평가를 나간 경우(왕복 12km 이상, 안양시청-구로시청 최단거리 : 15.02 km)(근무지 내)

<여비 산정 내역>

- (일비) 20,000 x 3 = 60,000원

\* 다른 시.군이고 왕복 12km 이상이긴 하나 교통여건(지하철, 버스 등)을 고려하여 근무지내로 판단

- 출장비 총액

구분	일비	식비	숙박비	여비	총액
금액	60,000	-	-	-	60,000

\* 참고(산정 내역)

구분	D+0	D+1	D+2
일비	20,000	20,000	20,000

③ 기타

- 여비 정산 등에 대한 이견 등이 있을 경우, 「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(인사혁신처예규 제135호, 시행 2022.7.22.)」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 기준에 따른다.

③ 원천징수

- 소득세법에 따라 평가수당과 여비(실비정산 포함)에 모두 포함